

「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3. 14(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4. 12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4. 12(화)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환경과장 전완택)

- 가.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 및 「지방세법」 제27조 규정에 명시된 가산금 요율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통일시켜, 부과·징수업무의 혼선을 방지
- 나.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(환경부령)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주기 연장제 조문 신설을 통해, 수질검사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- 다.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관련조항 개정(안 제19조)
 -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5%에서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 및 「지방세법」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3%로 하향조정
- 라. 수질검사주기 연장제 조문 신설(안 제5조의2)
 - 수질검사결과,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이하이고,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주기 조정

※ 수질검사주기 조정(강원도 통일안)

대상시설	현행검사 주기	조정(안) 검사주기
음용수(30톤 초과)	2년	3년
음용수(30톤 이하)	3년	5년
생활·농어업 및 공업용수	3년	6년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가. 본 조례안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5%에서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 및 「지방세법」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요율인 3%로 하향 조정하고,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질검사의 주기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강원도 통일안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
- 나. 수질검사의 주기를 지하수법의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관련법에 의해 위임조항 신설로 주민부담 경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하수이용 부담금에 대한 부과·징수도 국세와 지방세법의 요율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, 본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